

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및 향후 추진계획

2020. 10. 5.

1 추진경과

□ 초·중·고·대학 학사 운영 방안 마련·시행

- 초·중·고 온라인개학(4.9~)* 및 1학기 대학 전면 원격수업 허용(3.5)
 - * (4.9) 고3, 중3 → (4.16) 고1~2, 중1~2, 초4~6 → (4.20) 초1~3
-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과 연계하여 단계적 등교수업* 및 원격·등교수업 병행
 - * (5.20) 고3 → (5.27) 고2, 중3, 초1~2, 유치원 → (6.3) 고1, 중2, 초3~4 → (6.8) 중1, 초5~6
- 대학이 여건에 따라 원격·대면수업을 적절히 병행할 수 있도록 학사운영의 자율성 확대(9.9)
 - ※ 원격수업 개설 제한(20%) 폐지 및 이수학점 비율 상한 규제 완화 등
- 원격수업에 따른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'교육안전망 강화 방안 (방역·학습·돌봄)' 수립(8.11)

< 학습안전망 주요 내용 >

- (맞춤형 지원) 시 활용 맞춤형 교육 제공, 학교급별 학습 지원 및 학교 안팎 집중 지도 등
- (원격수업 질 제고) 등교수업 확대, 학생 맞춤형 피드백, 교원역량 제고 등
- (디지털 격차 해소) 디지털 기자재 지원, 교실 무선망 구축 및 플랫폼 콘텐츠 개선 등
- (취약계층 지원) 장애·다문화·학업중단 위기학생 등 교육취약계층 맞춤형 지원

- 교원·학생 간 쌍방향 소통 확대 등을 위한 보안 추진과제 발표(9.15)
- ※ 실시간 조·종례 운영, 쌍방향 원격수업 점진적 확대, 학생·학부모 상담 실시 등

□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

- '교육부 코로나19 대책본부'(본부장 : 부총리)를 운영하고, 상황실(1.20~) 및 코로나19 긴급대응반** (3.1~) 설치·운영
 - * 점검회의의 총 172회 개최(1.29~9.25, 부총리 주재 146회, 차관 주재 25회 등)
 - ** (3.1~) 코로나19대학긴급대응팀 → (7.1 확대·개편)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 (7.1 신설) 코로나19대응원격교육인프라구축과
- 시도교육청 공동 '등교수업 준비추진단'(3.20~, 단장: 차관) 및 관계부처, 대학, 지자체 등과 '범부처 유학생 지원단(2.2~, 단장: 부총리)' 운영
 - * 교육부·교육청 회의 총 37회 개최(20.3~9, 부총리 주재 5회, 차관 주재 32회)

2 학사운영 및 학교방역 등 지원

□ 유초·중고 원활한 학사운영 지원

□ 주요 추진내용

- (학사운영)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계한 **학교 밀집도 기준을 수립**(20.7) 하고, **지역·학교급별 특성**에 맞춰 등교 또는 원격수업 실시

< 학교 밀집도 시행 기준(안) >

구분	사회적 거리두기		
	1단계	2단계	3단계
유치원	등교·원격 수업	등교·원격 수업	원격수업 또는 휴업
초·중·고 특수학교	지역·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 내 2/3 밀집도 유지 권장	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※ 유·초·중학교는 밀집도 1/3, 고등학교·특수학교는 2/3 유지	전국단위 조정(원칙), 상황에 따라 권역 또는 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

※ 유치원의 경우 감염병 상황에서 수업일수 감축,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 개정(20.8 시행)

- (돌봄) 등교·원격수업 병행, 전면 원격수업 전환 등 **다양한 학사 운영에 따라 돌봄이 꼭 필요한 아이를 위해 지속적 돌봄 제공**

※ 참여현황 : 수도권 유치원 125,900명(45.4%), 초등 160,609명(6.0%), 특수 2,010명(7.5%)
[특수 5월, 유치원·초등 9월 기준]

- (현장 지원) '원격수업 집중의 달'(20.4)' 및 '등교수업 지원의 달'(20.6)'을 지정·운영하고, **학교 업무경감 지원**

< 학교 업무경감 지원(예시) >

- 시도교육청 대상 교육부 총합감사 및 '20년 평가(수요자 만족도 조사) 취소
- 학교폭력 실태조사 연 2회 → 연 1회(2학기)로 변경
- 학교정보공시 3회 입력 → 수시 입력으로 변경
-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, 교실수업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등 취소

- (제도 정비) 원격수업을 **정규수업으로 인정**하는 근거규정 강화 ('초·중·고교육법' 개정, '20.10. 예정)

- 등교·원격수업 병행에 따른 원활한 수업 및 학생평가 운영을 위해 **관련 지침 및 제도 정비**(20.4~)

※ 「학교생활기록작성 및 관리 지침」 훈령 개정(20.4, '20.7), 원격·등교수업 가이드라인 안내(20.4, '20.5, '20.6), 원격수업 학생평가 가이드북 개발·보급(20.8)

- 수행평가 또는 지필평가 중 선택 실시가 가능하고, **초·중·고**는 평가를 미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의 평가 부담 완화(20.7.-)

* 「학교생활기록작성 및 관리 지침」 훈령 개정(초 '20.7, 중 '20.9)

- 2 -

- (대입 일정 조정) 수험생 대입 준비기간 확보 및 원활한 고교 학사 여건을 위해 **수능 시행일 및 대입전형 일정 조정**

※ 수능 시행일 2주 연기(11.19 → 12.3), 수시 학생부 작성 마감일(8.31 → 9.16), 정시 학생부 작성 마감일(11.30 → 12.14) 변경 등

□ 향후 추진계획

- 학교 밀집도 기준 하에, **지역·학교별** 특성에 맞는 **탄력적인 학사운영**
※ 오전·오후학년제, 오전·오후반, 학급 분반 등
- 원격수업을 **정규수업으로 인정**하는 범위, 편성·운영 기준 등 제시 (~'20.12, 「초·중·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」 개정)
- 원격수업 상황을 반영하여 **주요 교과별 학습량 및 내용 적정화**(21.3 적용)

□ 학교 등 교육기관 및 학원 방역

□ 주요 추진내용

① 학교 방역 강화

- (방역 관리) 「학교 방역지침」 보완·배포(20.3~), 등교 전 자가진단, 발열검사, 학생 밀집도 최소화, 등교시간 차별화 등 **방역조치 철저**

학교 내 촘촘한 방역환경	밀집도 완화된 수업모델	유증상자 밀착 관리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핵심 이격배치, 창문 수시개방, 열화상카메라 설치 ▪ 마스크 냉방장치 사용 기준 마련 ▪ 책상·출입문 손잡이 소독 ▪ 식탁 칸막이 설치, 단방향 식사 ▪ 모든 학교 사전 모의훈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지역별 등교규모 기준 조정 ▪ 등교 및 쉬는 시간 자동화 ▪ 교실분반 수업 및 온·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 ▪ 원격수업 인프라 확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등교 전 자가진단 및 유증상자 등교 중지 ▪ 임상증상 발생 시 전원 선별 진료소 방문 진단검사 ▪ 해외 입국자 등교 중지 ▪ 기숙사 입소 전 진단검사

※ '주' 이상 위기 경보 발생시 교육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 협의로 등교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(20.9, 「학교보건법」 개정)

- (자가진단) **학생**(유·초·중·고) 및 **교직원**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**건강상태 자가진단 서비스 운영**(20.3~)

※ (1차 : '20.3~) 초·중·고 학생 중심 웹서비스 운영 → (2차 : '20.9~) 유·초·중·고·대학교 학생·교직원 대상 모바일 앱/웹 서비스 확대 운영

- (방역물품) 마스크·체온계 등 **방역물품 안정적 공급**(국고·지방비 총 1,255억)

※ 2학기 방역물품 비축 : 마스크 1인당 6.1개, 손소독제 교실당 6.4개, 알코올 티슈 교실당 15.1개, 손세정제 교실당 2.6개 등 확보예산 지원(20.8~)

- 3 -

- (방역인력) 교육부 자체 예산(국고), 교육청 및 지자체 협력 등을 통해 학교방역 지원인력을 1학기 수준(약 4만명) 이상 확보 추진
- (심리방역) 위(Wee)클래스, 심리지원단(정신과 전문의 약 60명, '20.5~) 등을 통한 학생 대면·비대면 상담 및 교직원 심리 회복* 지원('20.9~)
- * 온-오프라인 심리지원 프로그램('20.9~12),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하는 힐링캠프('20.10~)

② 학원 방역 지원

- (방역조치)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계 전국 대형학원 및 수도권 중소학원은 집합금지, 그 외 학원 및 교습소는 집합제한 조치('20.8~9)
- ※ 교육부, 교육청, 지자체 합동 방역점검('20.2~, 17만여 건) 실시, 8천여 건 미준수사례 적발 및 시정조치 / 방역물품 및 소독실시 145억 원 지원(~'20.9)
- (출입관리) 대형학원 및 수도권 전체 평생직업교육학원(4,504개소)에 전자출입명부 도입 의무화('20.6) 및 전체 설치 완료('20.7)

□ 향후 추진계획

- 수능 시험 방역 지침 수립, 시험장 확보 및 감독인력 추가 확보 등 철저한 방역준비 및 관리 하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('20.12)
- 유·초·중·고 전체 학생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('20.9~)
- 「학원법」 개정 추진('20.下~)
- ※ 학원의 방역의무 부과 및 위반시 제재조치 근거 마련 등

③ 대학 학사운영 지원

□ 주요 추진내용

- (자율성 확대) 대학이 원격·대면수업을 적절하게 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 개설 제한(20%) 폐지 및 이수가능학점 제한 완화
- ※ ('20.1학기~) 기존 개정을 통한 '20학년도 한시 적용 → ('20.10) 훈령 제정으로 제도화 추진
- (ICT 인프라) 국립대학 노후 서버를 민간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위한 운영비용(공공요금 및 제세), 고속 전산망 구축 등 지원('20. 352억)
- (재정 지원) 원격교육 환경개선 등을 위한 긴급 재정지원(일반대 760억, 전문대 240억) 및 온라인 원격 도우미(4,200명) 배치(~'20.10)

- 4 -

-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, 콘텐츠 제작 등을 위해 대학혁신지원사업비 활용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고, 사업비 집행기준 완화*('20.7)

*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, 교육·연구환경 개선비 집행 상한 상향(30% → 40%) 등

- (원격수업 지원) 중앙('20.4~) 및 10개 권역별('20.10 선정) 대학원격 교육지원센터* 구축을 통해 대학의 원활한 원격수업 운영 지원
- * 공용 LMS 구축운영, 녹화 스튜디오 및 장비 구축, 콘텐츠 제작 지원 원격수업 지원 등

- 방송통신대학교 강의 일부 무료 제공, K-MOOC 강좌 개발·제공 등을 통해 다양한 원격수업 콘텐츠 지원

- (현장 부담 완화) 2020학년도 1학기 학사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부 평가·감사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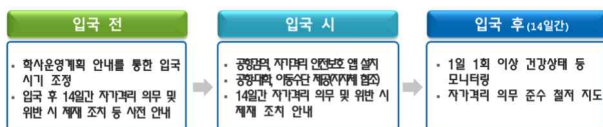
※ ('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) 비대면 교육활동 확대에 따라 온라인 강의 실적을 기존 평가지표에 포함하여 평가하고, 1학기 대면 교육활동 정량 실적 제외 등 평가부담 완화

□ 향후 추진계획

- 취약계층 대학생 대상으로 스마트기기 지원(11월 선발 → 12월 지원)
- ※ 한국장학재단 기부금을 활용하여 국가장학금 4구간 이하 학생 약 600명에게 태블릿 PC 지원
- 원격수업의 질 관리를 위해 대학별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구성('20.下)하도록 하고 '(가칭)대학 원격수업 인증제' 도입 추진('21~)
- 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마련('20.下)

④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

- 법무부, 행안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, 대학 등과 협력, 해외 입국자 방역체계와 연계한 입국 단계별 체계적 보호·관리 실시



※ 자가격리(입국 후 14일 간) 종료 이후에도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·관리를 통해 지역감염 및 지역사회 전파 차단

- 5 -

3 원격수업의 질 제고 및 교육격차 해소

□ 주요 추진내용

① 교사와 학생 간 실시간 소통 강화

- (조·종례)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·종례를 운영하고, 부득이하게 미참여하는 학생은 개별 연락(20.9~)
※ 실시간 화상 프로그램 또는 사회관계망 서비스(SNS) 등 활용
- (원격수업) 쌍방향 소통 수업¹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(주 1회 이상, '20.9~)
* 콘텐츠 활용 수업 중 실시간 채팅 등을 통해 학생에게 환류(피드백)하는 수업 포함
- 유치원 및 초등 1~2학년의 경우 EBS 및 학습·놀이 꾸러미를 활용 하되, 전화 등을 활용한 학생·학부모 소통 활성화
- (유·무선 상담) 원격수업이 1주일 내내 지속되는 경우, 주 1회 이상 학생·학부모와 전화 또는 SNS 등을 활용하여 상담

② 학습격차 완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

- (협력수업) 교원·예비교원 등을 활용한 협력수업(20. 초등 1,400개교, 중등 100개교) 활성화 및 기초학력 집중지원 담당교원 확보 지속 추진
- (방과후학교) 초·중·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수업 보충을 위한 대면·비대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² 확대 추진
* 초등 882개교, 중 1,035개교, 고 1,071개교 등에서 운영 중('20.9 기준)
- (에듀테크 멘토링) 기초학력 부족 학생, 취약계층 학생 등 대상 에듀테크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 지원(20.9~, 학생 약 3만명 지원)
- (학습 컨설팅) 중·하위권 고 1~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석교사 등 우수교사가 1:1 온·오프라인 학습 컨설팅 지원(20.10~11, 학생 2,264명 지원)
※ 학습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맞춤형 원격수업 지도 가이드라인 개발·보급(20.12.~)
- (대면지도) 기초학력 부족 학생 등은 학교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하여 소규모 대면지도 허용

- 6 -

③ 안정적인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

- (기기·데이터) 희망학생 전원에게 스마트기기 무상 대여(20.8 24.3만명) 및 유사시를 대비하여 스마트기기 여유물량(20.8 기준 25.3만대) 확보
- e학습터, EBS, 에듀에이블, 위두랑 등 주요 교육용사이트 모바일 데이터 무상 지원(~20.12)
- (무선망) 학교 내 무선 공유기(wifi) 사용을 우선 허용(20.4~)하고, 초·중·고 전체 교실에 기가급 무선환경³ 구축 추진
* Wifi 구축(누적) : (20.6) 8.1만실 → (21.6) 전체 일반교실(24.6만실) → (22) 전체 교실
※ 학교 교실 내 무선 공유기 사용 자율화 및 보안 규제 해소(20.3~) 및 안전하게 무선 공유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'학교 무선랜 보안 가이드' 추가 제작·배포(예정)
- (기자재) 교원의 PC 등 기자재 구입 등을 위한 학교운영비 활용을 허용(20.4)하고, 약 20만대 교원의 노후 PC 신규 교체(~20.12)
-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약 400개교에 교육용 태블릿 PC 지원(~20.12)
- (플랫폼) 공공 LMS 플랫폼(학습터, EBS온라인클래스)을 일일 300만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정화하고, 단계별 기능 개선⁴ 추진(20.9~)
* (20.9) 출결 확인 개선 등 → (20.11) 화상강의 서비스 연계 → (21.2) 교사학생 소통 기능 등 강화
- (콘텐츠) 방송중고, EBS 중학 프리미엄 강의 등 다양한 콘텐츠를 공공 LMS 플랫폼 내 제공, EBS 방송(초1,2 및 유치원) 프로그램 제작·송출
※ 관계부처, 미술관, 과학관 등과 협업하여 다양한 콘텐츠 개발·제공
- (저작권)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 요건을 완화(코로나19 종료시까지) 하고, 원격수업 저작권 관련 FAQ 제작·배포(20.4, '20.8)
※ 코로나19 종료 후에도 해당 학기 또는 학년까지는 공공플랫폼에 탑재된 원격수업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문체부 협의 완료(20.4)
- 교원의 저작권 관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'저작권 고충 센터' 운영(20.8~) 및 원격수업 저작권 가이드라인 마련(20.9)

④ 교원 원격수업 역량 강화

- (핵심교원) 쌍방향 온라인 연수를 통해 혁신적 수업방법, 평가, 학생지도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핵심교원으로 양성(~20.9, 1,827명)
※ 교원 연수 : (4.8) 원격수업 평가 역량 강화 약 46,000명 (4~5월) 원격수업 전문성 2,057명 (8~9월) 미래형 수업·평가 방법 등 핵심교원 연수 약 1,827명
- 학교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원격 수업방식, 평가 등을 연수할 수 있도록 강사요원 양성(20.9, 약 300명)

- 7 -

- (자율 연수) 교원 간 **자발적인 멘토링-역멘토링**을 촉진하기 위해 교과협의회 등 **교원 학습공동체를 연수기관으로 지정·운영**(수시)
※ 학습공동체 활동을 직무연수 실적으로 인정, 활동비용은 학교운영비 활용 가능
- (미래교육센터) 원격수업 실습 및 콘텐츠 제작 등이 가능하도록 **교·사대 미래교육센터** 설치(20.12)
- (우수사례 확산) 교원 간 경험을 공유·발전시키기 위해 **원격교육 대표교원 1만 커뮤니티**(20.3~) 및 **지식센터**(20.9~) 운영
* 원격수업, 에듀테크 등 관련 교원들 간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지식공유 서비스

⑤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

- (돌봄 취약계층) **맞벌이 가정, 조손가정 자녀**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**방과후학교 강사, 근로장학생** 등을 활용하여 원격수업 지원
 - (초등학교) 돌봄교실 및 컴퓨터실 등에서 방과후학교 강사 등 원격학습도우미를 활용하여 지원(20.9 기준 약 16만명 학생 초등돌봄 참여)
 - (마을돌봄기관) 인터넷 환경 구축 및 근로장학생(약 1,150명) 등을 활용하여 지원
 - (가정방문 등) 아이돌봄미(9,200명), 배움지도사(592명), 방문교육지도사(1,735명) 등을 활용하여 가정방문이나 관련 센터 등에서 원격수업 지원
- (장애학생) 장애유형·정도 등을 고려하여 **다양한 형태의 원격수업** 및 **1:1 방문교육, 학습꾸러미 제공** 등 맞춤형 교육활동 병행 지원
- '장애학생 온라인 학습방' 구축(20.4) 및 시각·청각·지체·발달장애 등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제공(20.4~)
- (다문화학생) 시도교육청과 연계하여 **통·번역 지원체계**를 구축, **한국어교육** 실시 및 **다국어 안내자료** 등 배포

□ 양후 추진계획

- 학생, 교사, 학부모 대상 **'원격교육 실태 설문조사'** 실시(20.10)
- 모든 초·중·고에서 온라인 **학습콘텐츠, 학습관리시스템(LMS), 학습도구**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**통합 플랫폼** 구축 추진
※ (~21.6) ISP 수립 → (~22) 플랫폼 구축 → (23~) 서비스 개통
- '수업목적' 저작물 활용 범위 확대 추진(문체부 협의)
-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「(가칭)원격교육기본법」 제정 추진(20.下~)

4 학생·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

- (유아) 3~4월 학부모 부담금 반환 유치원에 대해 **운영 재정 지원**(총 760억)
- (초·중학생) 초·중학교 연령 아동(학교 밖 학생 포함)에게 **아동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 지원비** 지급(1인당 (초) 20만원 (중) 15만원, 총 7,673억원)
- (고등학생) 당초 '21년 적용 예정인 **고1 무상교육 조기 시행**
※ 2학기 등 조기시행(10개): 서울·부산·인천·광주·대전·울산·세종·강원·경남·충북
1학기 환불 면제(2개): 대구·경북 / 전 학년 기 시행(3개): 충남·전남·제주
(7.14 기준, 교육청 자체 예산 부담)
- (대학생) '20.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**0.15%p 추가 인하**(1.85%), 실직·폐업한 학생·학부모 대상 **국가장학금 II 유형 최우선 지원** 및 **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**, '09년 이전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' 등
* 학자금 지원구간과 관계없이(9·10구간 포함) 등록금의 10% 추가 지원 / ** 7%대 → 2.9%
- 재난 발생 시 대학이 **등록금을 면제·감액할 수 있도록** 하는 근거 마련(20.9, 「고등교육법」 개정)

< 참고 : 교육분야 고용 위기 관련 지원 >

- (방과후강사) 원격학습 도우미, 돌봄 프로그램 운영, 급식·방역, 학생 생활지도 등 **교육활동 지원 인력**으로 투입
※ 온라인 개학 이후 방과후학교 강사 운용 현황(4.30 기준/중복 포함)
(원격학습 도우미) 9,705명, (돌봄프로그램 운영) 3,695명, (급식·방역 지원 등) 1,737명
- 방과후강사 생계 지원을 위한 **저금리 대출**(NH농협 협업) 및 **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** 지원(최대 150만원 지원/고용부 협업)
* (대출한도) 최소 50만원~최대 300만원 / (대출금리 및 기간) 3.3%(고정금리), 3년
- (교육공무직) **방학중비근무자**(조리원 등)에 대하여 **3월 23일부터 정상 출근 조치, 긴급돌봄 지원 및 청소·위생관리 등 대체 직무 부여**
- (영세학원) 경영안정이 시급한 **소상공인**을 대상으로 **'2차 재난지원금'** 지원(소상공인 새희망자금, 100~200만원)
*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매출 10억 원 이하,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학원
※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운영 중단된 전국 대형학원(433개소) 및 수도권 중·소형학원(41,443개소)에 대해 특별 세정지원
- (학부모·생산능가) 학교급식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 및 생산능가 등을 위해 **급식비 잔여예산을 활용한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(현물, 쿠폰 등) 지원** 추진
※ 서울·경기 등 14개 시도, 499만 명 학생 가정에 3,700억원 지원(20.5~7)